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5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성회・이기헌・백승아

윤종군 • 진선미 • 이재관

안태준 · 민병덕 · 이인영

고민정 • 서미화 • 한창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이에 가입할 수 없고,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,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집단행위를 원칙적·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영국·미국·일본·프랑스·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공무원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,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 를 확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57조).
- 나.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(안 제58조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860호),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2호),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1호),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3호),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제59조까지"를 "제57조까지, 제59조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제57조 및 제58조"를 "제57조"로 한다.

제5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과 제2항"을 "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를 삭제한다.

제83조 중 "제42조·제43조 또는 제58조"를 "제42조 또는 제43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적용범위) ① 특수경력직공 | 제3조(적용범위) ① |
| 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| |
|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| |
| 으면 제31조, 제41조제1항, 제4 | |
| 2조, 제43조, 제43조의2, 제43조 | |
| 의3,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, | |
| 제46조의2, 제46조의3, 제47조 | |
| 부터 제51조까지, 제51조의2, | |
| 제52조부터 <u>제59조까지</u> , 제61 | <u>제57조까지, 제59조</u> - |
| 조, 제74조, 제75조, 제75조의2, | |
|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, 제82조 | |
|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| |
| 적용한다. | |
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| ② |
|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| |
|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| |
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| |
|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<u>제57조</u> | <u>제57조</u> |
| <u>및 제58조</u> 를 적용하지 아니한 | |
| 다. | |
| ③・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무 |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<u><삭</u> |
| 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 | 제> |

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.

- ② (생 략)
-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 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 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 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집단행위의 금지) ① 공무 | <삭 제> 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예외로 한다.
 -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 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이 조합업무를 전임(專任)으로

| ②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|
| ③ |
| 제2항 |
| |
| |
| |
| |
| <u><</u> 삭 제> |

 하려면
 소속
 지방자치단체의

 장 또는 소속
 지방의회의 의장

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

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 제83조(벌칙)
 제42조・제43조 또

 나 제50조로 이바하 기는 다로

제83조(벌칙) <u>제42조·제43조 또</u> 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| 제83조(벌칙) | 제42조 | 또는 | 제43조 |
|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